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별고을 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10조 제1항 [별표 2]에 성주 별고을 운동장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함.

<성주별고을운동장 사용료>

(트랙 및 필드 사용료) (단위 : 원)

사용목적		단 위	사 용 료			비 고
			1 일	오 전	오 후	
체 육 경 기	트랙	평 일	50,000	20,000	30,000	· 축구 경기는 1회 4시간 적용
		토·일·공휴일	70,000	30,000	40,000	
	필드	평 일	100,000	45,000	55,000	
		토·일·공휴일	150,000	70,000	80,000	
체 육 경 기 외	트랙	평 일	100,000	40,000	60,000	
		토·일·공휴일	140,000	60,000	80,000	
	필드	평 일	200,000	90,000	110,000	
		토·일·공휴일	300,000	140,000	160,000	

(부속시설 사용료) (단위 : 원)

종류	기 준	사 용 료	비 고
음향시설	1회	30,000	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
	1일	60,000	
전기시설	1회	30,000	
	1일	60,000	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.

다.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.

라. 입법예고: 의견없음(2016.9.21.~2016.10.12.)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9월에 “성주군 별고을 운동장”이 준공됨에 따라 「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」제10조제1항 [별표 2]에 기존의 생활체육시설(테니스,정구,족구장), 축구장, 야구장 사용료에 “성주 별고을 운동장 사용료”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군민의 숙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한 시설물 개방과 이용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